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1006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문옥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이달균, 최재호, 박현철

변론 종결2022. 7. 7.

판결 선고2022. 9.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12.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12. 23. 접수 제1550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D은행 E금융센터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2018. 5. 30. 보증원금 891,000,000원, 보증기간 2020. 5.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2019. 1. 23. 보증원금 141,300,000원 및 265,500,000원, 보증기간 2034. 1.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2019. 9. 2. 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간 2022. 9.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행은 2020. 2.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2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908,144,202원, 143,572,844원, 270,258,960원, 274,813,59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9. 1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609,774,062원 및 지연손해금, B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192,442,9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0. 7.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차전16914호).

라. 한편, B은 2019. 12. 13.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12. 23.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매도 당시 채권자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참조).

2) 채권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20. 7. 28.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게 된 사실을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2021. 10. 14.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당시 재정 상태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19년 표준대차대조표(2019. 12. 31. 기준)상 자산총계는 6,733,575,952원이고, 부채총계는 5,901,810,645원이며, 이익잉여금이 231,765,307원이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9. 12. 13.) 무렵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위 대차대조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¹⁾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655,771원, 단기예금 35,739,670원, 토지 1,041,039,610원, 건물 2,656,033,482원(= 2,898,509,034원 - 242,475,552원), 기계장치 1,178,712,984원(= 1,775,399,743원 - 596,686,759원), 차량운반구 179,171,209원(= 353,878,007원 - 174,706,798원), 공구 등 63,858,863원(= 114,165,540원 - 50,306,677원), 보증금 246,029,860원 등 합계 5,409,241,449원에 불과하다. 그 외 기타 유동자산, 기타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등은 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종류의 자산인지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자산을 강제집행을 통하여 용이하게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나머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별도의 물적 담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다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반면, 위 대차대조표상 소외 회사의 부채 등 소극재산은 5,901,810,645원으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는 2019년경 매출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2019. 12. 30.경부터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2020. 2.경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B은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서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위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자신의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소외 회사는 재무상태나 변제자력이 취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피고는, B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외 회사에 대여하여 기계설비 대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소외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2019. 10.경 발생한 조류독감 등으로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사해행위 및 선의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F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2019.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서 누나인 피고가 적당한 가격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8.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0. 2. 5. 위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익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근저당권은 B이나 피고의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 아니라 B이 다른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해해위취소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 방법은 원물반환임에도 위 법리에 의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이유는 채권자들이 당초의 공동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취득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 반환방법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부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유정

별지

1) 이하 2019. 12. 30. 기준 가액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12. 13.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